안전·공공질서

03

전국 최초, 규제개혁·적극행정 신속 자문기구 프로목민관 의견제시 제도 출범

추진부서 | 경기도 남양주시 의회법무과, 031-590-7310

변화의 중심 기회의 경기

개선배경



기존 **기존 의사결정 지원제도(적극행정위원회, 사전컨설팅)의 한계**
(안건 상정의 어려움, 민간위원 주축으로 신속 개최 애로 등)

추진 과정 적극행정 순회간담회를 통한 **문제점 인식** ⇨ **해결방안 검토** ⇨ **관련 훈령 제정** ⇨ **프로목민관 의견제시 제도 출범** ⇨ **미해결 시, 다른 제도 이용(규제개선 건의 등)**

개선 안건별 적합한 **프로목민관(베테랑 공무원 및 의회법무과 소속 변호사)**으로 내부위원회를 구성하여 **공문으로 신속 의견제시**
– **(기존 제도 대비)** 폭넓은 안건 상정 및 신속 의견제시 가능
– **(고문변호사 질의 대비)** 공문으로 의견제시 함으로 적극행정 직원 부담 경감

효과 **'25년 1~5월 동안 13차 회의(22건)**를 통해 다양한 문제 해결 및 인허가(복합민원) 속도 단축
– **월 평균 4건 이상의 안건 처리로 기존 지원제도 대비 효과 입증**

개선배경

- 기존 의사결정 지원제도(적극행정위원회, 사전컨설팅 등)의 한계로 인해 행정행위 간 발생하는 다양한 실무상 애로*에 대한 즉각적인 해소 방안 필요

  *법령해석, 재량 및 정책적 영역, 부서 간 의견 충돌, 복합민원 등

  – **(적극행정위원회)** 부시장(위원장) 및 민간위원이 주축으로, 개최를 위해 평균 3~4주의 시간이 소요되고 안건 중심 심의로 인해 폭넓은 안건 상정이 곤란하며, 예산 문제로 잦은 개최가 어려움(위원 수당 1회당 평균 100만 원)

  – **(사전컨설팅)** 감사부서가 주축으로, 법률상 가능 여부를 엄격히 판단하여 실제 안건 상정이 상당히 난해한 경우가 많음(안건 검토 단계에서 상급 기관 반려 사례 다수)

– **(고문변호사 질의)** 법령해석 질의만 가능하여 실무상 발생하는 애로사항**에 관한 자문 등 해결이 난해하며, 법령해석도 고문변호사 간 의견이 통일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 부서 자체적 판단 및 결정 시까지 행정행위 지연

**재량 및 정책적 영역, 부서 간 의견 충돌, 복합민원 등

● 인허가 권한*이 읍 · 면 · 동으로 위임된 사무의 경우, 담당자는 주로 저연차 공무원으로서 해당 업무에 관한 경험이 부족한 경우나 직렬에 맞지 않는 업무를 수행**하는 경우가 다수임에도, 신속하고 공신력있는 자문을 구할 곳이 없어, 인허가 처리 속도 저하 및 규제개혁 · 적극행정 실현 애로 등의 문제가 발생함

*농지 · 산지 · 도로에 관한 점용허가 등

**행정직이 농지나 산지 관련 업무 수행 등

개선내용

● **(문제점 인식) 규제개혁 · 적극행정 순회간담회 결과, '신속 자문 창구' 필요성 인식**

적극행정 순회 간담회 개요	중점과제 선정
– 일시 : '24. 9. ~ '24. 11. – 방식 : 설문 및 대면 간담회 병행 (설문) 16개 읍면동 (대면) 12개소 1,000여 명 (인터뷰) 8명(시민, 저연차 공무원 등)	– 시민 및 공무원으로부터 총160건 애로접수 – 13건 중점과제 선정 후 해결방안 검토 ☞ **13건의 과제 중 '적극행정 신속 자문기구 필요성' 포함**

● **(문제 해결) 「프로목민관*」**(의회법무과 소속 변호사 포함) **의견제시 제도 출범**

*인허가 등의 실무에 능하고 자문 능력이 있어 부서와 직렬별 추천을 받은 市 베테랑 공무원

– **(2014. 12. 6.)** 프로목민관 의견제시 시범운영

▶ 의회법무과 소속 변호사 회의 참여 및 고문변호사 자문 병행을 통한 신뢰성 제고

– **(2015. 1. 16.)** 「남양주시 프로목민관 의견제시 제도 운영 규정」 훈령 제정

• **(안건별 위원회 구성)** 의회법무과장을 위원장으로 **평균 1주 이내** 신속 개최

• **(의견제시 효력)** 프로목민관 의견제시에 따라 업무 처리 시, 남양주시 **적극행정위원회**에 해당 공무원 **적극행정 면책 건의 명문화**

• **(인센티브 부여)** 프로목민관에 **적극행정 마일리지 지급** 등 인센티브를 통한 제도 활성화

▶ 의견제시 결과를 공문으로 시행함에 따른 규제개혁 추진 근거 및 적극행정 공무원 책임 부담 경감

– **(2015. 1. 31.)** 부서 추천을 통한 각 **분야별 프로목민관** 임명

분야	개발	도시	교통	건축	공사	기업	환경	GB	산지	농지	지적	하천	도로	주택	보건	노무	세무	법률
총 25명	2	2	1	1	1	1	1	2	1	1	1	1	1	2	1	1	1	4

▶ 주택관리사, 노무사, 토목시공기술사, 폐기물처리기술사 등 전문 자격 보유 직원 발굴

개선효과

- 기존 의사결정 지원제도로 해결이 어려운 다양한 실무상 애로 발생 시, 즉각적인 의견 제시를 통한 적극행정 공무원의 책임을 경감하고, 규제개혁 건의 방향성 및 논리 보강 등을 통한 규제개선 효과성 제고

- 유사 안건에 대한 동일 애로가 발생하지 않도록 중앙부처 상위법령 개선 건의 및 자치법규 자체 개선(규제개혁위원회 심의 등) 등의 후속 조치를 통한 실질적 의미의 규제개혁 및 적극행정 달성

▶ 규제애로 개선내용 (대표 사례 중심)

- 전기자동차 구매지원 사업 처리 시 신청인이 날인하여 「무공해차 통합누리집」에 업로드한 신청서를 원본으로 인정하여 회계서류에 활용함으로써 보조금 지급 처리 기간 단축 및 행정절차 간소화 달성
  ☞ (후속조치) 지방회계관리훈령 '증거서류는 원본이어야 한다.' 부분 개정건의

- 현행 업무분장 상 유지 · 관리 부서가 불명확한 비법정도로 상의 20m 미만 교량에 대해 부서 간 의견 충돌 조율
  ☞ (후속조치) 소규모공공시설 안전진단 용역과 연계한 관리 부서 배정으로 안전사고 방지

- 등기 수수료 비용보다 적은 소액 변상금 부과시 일반우편물 활용으로 재정건전성 확보
  ☞ (후속조치) 소액 사용료에 대한 징수를 면제할 수 있도록 법률개정 건의

- 무허가 생활체육시설(수동배드민턴장)에 안정 보강을 위한 예산 투입 대신 대체 부지 확보를 통한 신규 배드민턴장 건설 의견제시
  ☞ (후속조치) 동일 안건으로 적극행정위원회를 개최하여 의견제시 신뢰성 향상

- 반환 안내 없이 소멸시효가 도과된 개발행위허가 이행보증금(세입세출외현금)에 대해, 시효이익 포기를 통해 민원인에게 반환 결정
  ☞ (후속조치) 소멸시효 완성 전 적시 반환 안내를 통해 시민 권리 보호 시스템 강구

- 공동주택 부설주차장 내 주차구획을 하나의 확장형으로 표시하고, 공동주택 관리규약 등으로 이용방식을 정하여 활용하는 것은 주차장법 위반이 아니라고 의견제시 함으로써 주차장 자투리 공간 활용 민원 해결
  ☞ (후속조치) 시 전체 행정복지센터에 의견제시 결과 공유를 통해 주정차 단속 기준 일원화

